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람	기 관 의 장



# 포항시보

제 857호 2011. 11 22(화)

## ◀ 고 시 ▶

- 도로명주소 고시(제2011-94호) ..... 2
- 도로명주소 폐지 고시(제2011-94호) ..... 9
- 포항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변경) 고시(제2011-96호) ..... 11
- 하천점용허가 및 실시계획 인가 고시(제2011-97호) ..... 17

## ◀ 공 고 ▶

- 공 인 공 고(제2011-1074호) ..... 18
- 포항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제2011-1075호) ..... 19

회 람									
--------	--	--	--	--	--	--	--	--	--

고 시

포항시 고시 제2011-94호

도로명주소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제6항에 따라 건물등에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포항시장 박승호

2011. 11. 17.

○ 도로명주소 :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일출로 395외 93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별지참조)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포항시 도시계획과(☎270-3492~3495)에 문의 또는 새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http://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현행 지번주소는 일정기간 도로명주소와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 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NO	중점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고시일	도로명부여사유	비고
1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석별리 216-2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일출로 395	20091201	해안선을 따라 일출을 감상할 수 있는 도로로 지역적특성을 이용한 도로명	
2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동촌동 701-3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동해안로 6261	20090710	동해안의 지역적 특성을 이용한 도로명	
3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괴동동 1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동해안로 6261	20090710	동해안의 지역적 특성을 이용한 도로명	
4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일월동 240-13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동해안로 5906	20090710	동해안의 지역적 특성을 이용한 도로명	
5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대송면 대각리 431-1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대송면 운재로 443	20091201	운재를 향하는 도로로 지명을 이용한 도로명	
6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호미곶면 구만리 61-24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호미곶면 구만길 279-8	20091201	행정구역명(구만리)을 이용하여 구만길로 명명	
7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상동동 18-31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중흥로162번길 31	20091201	중흥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1,620m 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8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지곡동 482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지곡로212번길 33	20091201	지곡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2,120m 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9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효자동 575-3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효성로 24	20091201	예로부터 효자가 많은 지역으로 효자동의 지역적특성을 이용한 도로명	
10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효자동 574-8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효성로 17	20091201	예로부터 효자가 많은 지역으로 효자동의 지역적특성을 이용한 도로명	
11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인덕동 294-8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인덕로 7-11	20091201	행정구역명(인덕동)을 이용하여 인덕로로 명명	
12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오천읍 용덕리 21-22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오천읍 도솔로45번길 58	20091201	도솔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450m 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13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오천읍 세계리 769-3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오천읍 도솔로45번길 23-1	20091201	도솔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450m 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14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병표리 327-7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호미로 44-12	20091201	호미로이 끼린 호미곶을 연결하는 순환도로로 지명을 이용한 도로명	
15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동해면 도구리 467-1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동해면 일월로56번길 48-5	20091201	일월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560m 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16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대정동 909-16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회양대로 621-16	20091201	"꿈과 희망의 도시 클로버 포항" 미래의 대도시 포항발전의 희망을 담은 도로명	
17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오천읍 원리 1442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오천읍 남천로252번길 13	20091201	남천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2,520m 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18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오천읍 원리 1280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오천읍 남천로236번길 34	20091201	남천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2,360m 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19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장기면 계원리 468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장기면 계원길29번길 77	20091201	계원길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29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NO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고시일	도로명부여사유	비고
20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오천읍 원리 1159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오천읍 원동로 110	20091201	원동 구획정리지역으로 지명을 이용한 도로명	
21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오천읍 원리 933-3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오천읍 원동로 42	20091201	원동 구획정리지역으로 지명을 이용한 도로명	
22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오천읍 원리 933-5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오천읍 원동로 38	20091201	원동 구획정리지역으로 지명을 이용한 도로명	
23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오천읍 원리 933-8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오천읍 원동로 36	20091201	원동 구획정리지역으로 지명을 이용한 도로명	
24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오천읍 원리 1393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오천읍 중원로 9	20091201	원동 구획정리지역의 중심부에 위치하는 도로로 방위(중)와 지명(원동)을 이용한 도로명	
25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오천읍 용덕리 291-10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오천읍 정동주로 569	20091201	오천에서 출생하신 포은 정몽주 선생의 인명을 이용한 도로명	
26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오천읍 문충리 164-6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오천읍 정동주로 72	20091201	오천에서 출생하신 포은 정몽주 선생의 인명을 이용한 도로명	
27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오천읍 세계리 820-2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오천읍 장기로1690번길 27	20091201	장기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16,900m 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28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오천읍 문덕리 345-4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오천읍 문덕로37번길 6	20091201	문덕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370m 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29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오천읍 원리 1203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오천읍 하원로3번길 8	20091201	하원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30m 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30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대도동 86-26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상공로 157-5	20091201	상공회의소를 지나는 도로로 상공업의 발전을 염원하는 지역적 특성을 이용한 도로명	
31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오천읍 문덕리 196-10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오천읍 칠강로723번길 13-6	20091201	칠강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7,230m 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32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오천읍 용덕리 275-6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오천읍 해평로269번길 20-33	20091201	해평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2,690m 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33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동해면 금광리 677-2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동해면 금광로237번길 3	20091201	금광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2,370m 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34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동해면 석리 210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동해면 일월로278번길 29	20091201	일월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2,780m 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35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연일읍 유강리 592-3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연일읍 유강로아미번길 23	20091201	유강리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90m 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36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연일읍 유강리 592-13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연일읍 유강로9번길 21	20091201	유강리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90m 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37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청림동 1181-3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정동주로 823-12	20091201	오천에서 출생하신 포은 정몽주 선생의 인명을 이용한 도로명	
38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청림동 1182-9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정동주로 823-10	20091201	오천에서 출생하신 포은 정몽주 선생의 인명을 이용한 도로명	

NO	중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고시일	도로명부여사유	비고
39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장기면 읍내리 77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장기면 읍내길 81-24	20091201	행정구역명(읍내리)을 이용하여 읍내길로 명명	
40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장기면 모포리 21-1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장기면 모포길 111-2	20091201	행정구역명(모포리)을 이용하여 모포길로 명명	
41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장기면 모포리 17-2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장기면 모포길 109-6	20091201	행정구역명(모포리)을 이용하여 모포길로 명명	
42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병포리 246-1, 244-3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하정로172번길 17	20091201	하정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1,720m 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43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해동동 41-65, 41-40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중앙로147번길 9	20091201	중앙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1,470m 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44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호동 신87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칠간로 343-10	20091201	세계적인 칠간 도시 포항의 지역적 특성을 이용한 도로명	
45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장기면 신창리 812-2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장기면 읍내길16번길 203-75	20091201	읍내길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160m 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46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구평리 15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동해안로 4300-22	20090710	동해안의 지역적 특성을 이용한 도로명	
47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오천읍 원리 941-1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오천읍 남천로308번길 9-4	20091201	남천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3,080m 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48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호자동 571-5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호성로15번길 13	20091201	호성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150m 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49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이동 608-17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포스코대로 51-1	20091201	세계적인 기업 포스코와 포항시의 상생을 위해 포스코 40주년을 기념하여 기업명을 도로명으로 명명	
50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오천읍 용덕리 168-19, 168-11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오천읍 총무로60번길 32	20091201	총무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600m 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51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동해면 도구리 715-1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동해면 일월로95번길 19	20091201	일월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950m 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52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오천읍 문덕리 879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오천읍 문덕로24번길 33-2	20111108	문덕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240m 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53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죽정리 164-2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죽정길 356-30	20111104	행정구역명(죽정리)을 이용하여 죽정길로 명명	
54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흥해읍 죽성리 53-2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흥해읍 죽성로 78-1	20091201	옛 지명(죽성)을 이용하여 죽성로로 명명	
55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두호동 653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상호로 216-1	20091201	옛포항의 3대 호수(아호, 두호, 환호)를 연결하는 도로로 역사성을 이용한 도로명	
56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학산동 127-17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학산로 81-5	20091201	행정구역명(학산동)을 이용하여 학산로로 명명	
57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학산동 185-7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학산로 65-1	20091201	행정구역명(학산동)을 이용하여 학산로로 명명	

NO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고시일	도로명부여사유	비고
58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흥해읍 약성리 217-4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흥해읍 흥해로81번길 19	20091201	흥해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810m 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59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신광면 냉수리 586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신광면 비학로 452	20090730	학이 날아가는 형상인 포항의 명산 비학산의 지명을 이용한 도로명	
60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흥해읍 중성리 31-3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흥해읍 한동로 114	20091201	흥해에서 한동해를 지나 한반도의 동쪽 동해를 향하는 도로로 지역적 특성과 방위를 이용한 도로명	
61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흥해읍 칠포리 228-28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흥해읍 해안로1512번길 35	20091201	해안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15,120m 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62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장성동 448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새천년대로 1198	20091201	환동해 물류중심도시 포항이 동해로 원자재 뱃길을 뚫어가는 새천년의 희망을 담은 도로명	
63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장성동 1509-10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범원로111번길 12-1	20091201	범원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1,110m 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64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양덕동 1680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전마로46번길 34	20091201	전마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460m 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65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흥해읍 덕장리 598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흥해읍 덕장길 124-49	20091201	행정구역명(덕장리)을 이용하여 덕장길로 명명	
66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송라면 광천리 695-15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송라면 보경로 179	20091201	내연산 보경사 근린공원을 향하는 도로로 지역적 특성을 이용한 도로명	
67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대신동 72-13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대신로35번길 15-1	20091201	대신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350m 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68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장성동 1386-23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장랑로75번길 39-1	20091201	장랑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750m 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69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죽도동 87-27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중흥로309번길 25	20091201	중흥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3,090m 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70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죽장면 가시리 608-3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죽장면 죽장로 684	20090730	죽장면소재지에서 영덕을 연결하는 도로로 행정구역 명칭을 이용한 도로명	
71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죽도동 93-16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죽도로28번길 63-1	20091201	죽도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280m 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72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죽도동 87-2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죽도로28번길 40	20091201	죽도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280m 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73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양덕동 1631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장랑로174번길 17	20091201	장랑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1,740m 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74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양덕동 1947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양덕로6번길 37	20091201	양덕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60m 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75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양덕동 1323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전마로 99	20091201	양덕사거리에서 전마산북을 지나 영일만 신항을 연결하는 도로로 지명을 이용한 도로명	
76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장성동 1491-5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신덕로 287	20091201	옛 지명(신덕)을 이용하여 신덕로로 명명	

NO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고시일	도로명부여사유	비고
77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양덕동 1591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장광로 177	20091201	행정구역명(장광동)을 이용하여 장광로로 명명	
78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양덕동 1800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양덕로 6	20091201	행정구역명(양덕동)을 이용하여 양덕로로 명명	
79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죽도동 663-2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중흥로161번길 39	20091201	중흥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1,610m 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80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청하면 신흥리 신36-3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청하면 용신로 168	20091201	청하의 안산인 용산 남쪽자락을 따라 형성된 길로 옛 지명을 이용한 도로명	
81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용흥동 545-2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용흥로191번길 3	20091201	용흥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1,910m 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82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기북면 용기리 95-3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기북면 기북로472번길 15	20091201	기북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4,720m 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83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양덕동 1520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장광로158번길 27	20091201	장광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1,580m 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84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양덕동 1518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장광로158번길 23	20091201	장광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1,580m 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85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양덕동 1528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천마로46번길 12-5	20091201	천마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460m 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86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죽도동 158-25, 158-24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죽도로 13-10	20091201	행정구역명(죽도동)을 이용하여 죽도로로 명명	
87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동민2가 144-2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칠성로65번길 8-1	20091201	칠성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650m 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88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흥해읍 학천리 607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흥해읍 도음로821번길 91	20091201	도음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8,210m 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89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기계면 상계리 248-1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기계면 상계길176번길 7-6	20091201	상계길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1,760m 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90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양덕동 1712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장광로190번길 19	20091201	장광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1,900m 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91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기계면 현내리 704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기계면 기계로133번길 41	20091201	기계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1,330m 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92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흥해읍 북송리 208-147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흥해읍 신흥로675번길 33	20091201	신흥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6,750m 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93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양덕동 1571-1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천마로72번길 28	20091201	천마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720m 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94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기북면 관천리 142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기북면 구관길245번길 55-45	20111104	구관길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2,450m 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포항시 고시 제2011-94호

### 도로명주소 폐지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건물 등에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폐지하고, 도로명주소법 제18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도로명주소 폐지 등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포항시장 박승호

2011. 11. 17.

○ 도로명주소 : 포항시 북구 삼호로 216-1 외 34건

연번	도로명주소	도로명 폐지일	폐지사유	비고
(별지참조)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포항시 도시계획과(☎270-3492~3495)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사항

- 도로명주소 폐지 후 건물 등의 신축으로 건물번호를 부여 받아야 할 때에는 도로명주소법 제16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에 따라 건물 등의 소유자가 건물번호 부여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 건물번호판의 제작·설치에 드는 비용은 건물 등의 소유자가 부담합니다.

[별지]

## 도로명주소 폐지고시 조서

No	도로명주소	폐지일	도로명주소 폐지사유	비고
1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삼호로 216-1	20111101	건축물 말소	
2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황도길4번길 10	20111102	건축물 말소	
3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죽장면 죽장로335번길 11	20111102	건축물말소	
4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중흥로162번길 31	20111103	건축물말소	
5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중앙로131번길 16	20111103	건축물말소	
6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중앙로131번길 20-2	20111103	건축물말소	
7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중앙로147번길 7	20111103	건축물말소	
8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중흥로162번길 31	20111104	건축물말소	
9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중앙로147번길 9	20111104	건축물말소	
10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오천읍 충무로60번길 32	20111104	건축물말소	
11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동해면 일월로95번길 19	20111104	건축물말소	
12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장기면 모포길 109-6	20111104	건축물말소	
13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대신로35번길 15-1	20111107	건축물말소	
14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장량로75번길 39	20111107	건축물말소	
15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송라면 보경로179번길 2	20111107	건축물말소	
16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정몽주로 823-12	20111109	건축물말소	
17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오천읍 문덕로 14-1	20111109	건축물말소	
18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상공로 157-5	20111110	건축물말소	
19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정몽주로 823-12	20111110	건축물말소	
20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기북면 기북로472번길 15	20111110	건축물말소	
21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인덕로 7-11	20111114	건축물말소	
22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동해안로 6261	20111115	건축물말소	
23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동해안로 6261	20111116	건축물말소	
24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동해안로 6261	20111116	건축물말소	
25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오천읍 정몽주로 567	20111116	건축물말소	
26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오천읍 정몽주로 569	20111116	건축물말소	
27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죽도로 13-10	20111116	건축물말소	
28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죽도로28번길 63-1	20111116	건축물말소	
29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죽도로28번길 65-1	20111116	건축물말소	
30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중흥로161번길 37-6	20111116	건축물말소	
31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중흥로161번길 39	20111116	건축물말소	
32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죽도로28번길 40	20111117	건축물말소	
33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중흥로309번길 23	20111117	건축물말소	
34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중흥로309번길 25	20111117	건축물말소	
35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장량로 177	20111117	건축물말소	

포항시 고시 제 2011 - 96 호

**포항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변경) 고시**

포항 도시계획시설사업【벧머리마을 문화콘텐츠센터 건립】시행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9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실시계획을 (변경)고시합니다.

포항시장 박승호

2011. 11. .

- 다 음 -

- 1. 사업의 위치 : 포항시 남구 상도동 111번지 외 82필지
- 2. 사업의 종류·명칭
  - 종류 : 도시계획시설(문화시설) 사업
  - 명칭 : 벧머리마을 문화콘텐츠센터 건립공사
- 3. 사업 면적·규모
  - 대지면적 : 54,583m<sup>2</sup>
  - 건축면적 : 5,184.96m<sup>2</sup>(연면적 :12,826.99m<sup>2</sup>)
  - 건폐율 : 9.50% , 용적률 : 17.56%
- 4. 사업 시행자
  - 성 명 : 포항시장(506-83-00025)
  - 주 소 : 포항시 남구 시청로1

5. 사업예정일 : 2010실시계획 협의일 ~ 2013. 06. 30.

6. 변경 내용

가) 지장물(건물) 추가 고시(붙임조서 참조)

나) 사업예정일 연장

- 당 초 : 2010 실시계획협의일 ~ 2012. 06. 30.

- 변 경 : 2010 실시계획협의일 ~ 2013. 06. 30.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건물)등의 내용 : 【붙임조서】 참조

8. 기타 상세한 사항은 포항시 건설환경사업소 업무시설과 건축담당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화 : 054-270-5233)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변경) 고시 조서(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건물등)

공사명 : 뱃머리마을 문화콘텐츠 건립공사

구분				지 목		지적	편집면적	소유자		소유권이의 권리명세서	비 고
	소재지	분할전지번	분할후지번	공부	사실			주소	성명		
계		83 건					54,583				
1	포항시 남구 상도동	110		답	답	1,501	1,501		포항시		
2	포항시 남구 상도동	111		전	전	1,395	1,395		포항시		
3	포항시 남구 상도동	191-2		답	답	1,286	1,286		포항시		
4	포항시 남구 상도동	191-3		답	답	668	668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59-9	정홍순		1/3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이매동 143 아름마을 706-2003	정홍근		1/3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960-1	정홍자		1/3
5	포항시 남구 상도동	191-6		답	답	20	20		형산면		
6	포항시 남구 상도동	191-7		대	대	38	38		포항시		
7	포항시 남구 상도동	191-8		잡	잡	662	495	부산시 연제구 연산4동 585-6 영산무지개 502	장경수		
8	포항시 남구 상도동	191-12		답	답	1,947	1,219	부산시 연제구 연산4동 585-6 영산무지개 502	장경수		
9	포항시 남구 상도동	192-1		답	답	2,374	2,374		포항시		
10	포항시 남구 상도동	192-2		답	답	242	242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한국농어촌공사		
11	포항시 남구 상도동	192-3		답	답	1,170	856	포항시 남구 대잠동 160-24	두진형		
12	포항시 남구 상도동	192-6		대	대	4	4		포항시		
13	포항시 남구 상도동	193-1		답	답	238	193	포항시 남구 대잠동 160-24	두진형		
14	포항시 남구 상도동	193-2		답	답	588	588		포항시		
15	포항시 남구 상도동	193-3		도	도	176	176		포항시		
16	포항시 남구 상도동	193-4		잡	잡	990	990		포항시		
17	포항시 남구 상도동	193-5		답	답	244	244		포항시		
18	포항시 남구 상도동	193-6		종	종	1,645	1,645		포항시		
지장물				건물 : 철근콘크리트 조 (연면적 894.36㎡) 1층: 종교집회장(387.6㎡) 2층: 종교집회장(387.6㎡) 3층: 단독주택(119.16㎡)	포항시 남구 상도동 193-6번지	대한예수교장로회 포항성안교회	추가				
19	포항시 남구 상도동	193-7		답	답	1,665	1,665		포항시		
20	포항시 남구 상도동	193-8		답	답	769	769		포항시		

구분				지 목		지적	편입면적	소유자		소유권이의 권리명세서	비 고
	소재지	분할전지번	분할후지번	공부	사실			주소	성명		
21	포항시 남구 상도동	193-10		답	답	44	44		포항시		
22	포항시 남구 상도동	193-11		답	답	13	13		포항시		
23	포항시 남구 상도동	193-16		도	도	32	32		포항시		
24	포항시 남구 상도동	194-1		답	답	340	340	포항시 남구 대잠동 160-24	두진형		
25	포항시 남구 상도동	194-2		답	답	1,749	1,749		포항시		
26	포항시 남구 상도동	195-1		답	답	17	17		포항시		
27	포항시 남구 상도동	195-2		구	구	76	76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한국농어촌 공사		
28	포항시 남구 상도동	195-3		답	답	2,245	2,245		포항시		
29	포항시 남구 상도동	196-1		답	답	1,283	1,283		포항시		
30	포항시 남구 상도동	196-2		답	답	172	172		포항시		
31	포항시 남구 상도동	196-3		전	전	2,036	2,036		포항시		
32	포항시 남구 상도동	196-4		답	답	902	902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59-9	정홍순		1/3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이매동 143 아름마을 706-2003	정홍근		1/3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960-1	정홍자		1/3
33	포항시 남구 상도동	196-5		전	전	182	182		포항시		
34	포항시 남구 상도동	197-5		답	답	1,871	1,871		포항시		
35	포항시 남구 상도동	197-6		답	답	1,028	1,028		포항시		
36	포항시 남구 상도동	197-7		답	답	403	403		포항시		
37	포항시 남구 상도동	197-8		답	답	2,010	2,010		포항시		
38	포항시 남구 상도동	197-9		답	답	274	274		포항시		
39	포항시 남구 상도동	197-10		답	답	499	499		포항시		
40	포항시 남구 상도동	198-3		답	답	2,334	2,334		포항시		
41	포항시 남구 상도동	199-2		답	답	32	32	포항시 북구 덕수동 911-4번지	김광익		
42	포항시 남구 상도동	199-3		전	전	657	657		포항시		
43	포항시 남구 상도동	200-3		전	전	171	171		포항시		
44	포항시 남구 상도동	201-4		전	전	19	19		포항시		
45	포항시 남구 상도동	216-1		구	구	465	465		국(농림부)		
46	포항시 남구 상도동	474-92		도	도	189	189		포항시		

구분				지 목		지적	편입면적	소유자		소유권이의 권리명세서	비 고
	소재지	분할전지번	분할후지번	공부	사실			주소	성명		
47	포항시 남구 상도동	576		구	구	10	10		포항시		
48	포항시 남구 상도동	577		답	답	257	257		포항시		
49	포항시 남구 대도동	316-35		구	구	148	40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한국농어촌 공사		
50	포항시 남구 대도동	316-9		도	도	26	26		국(농림부)		
51	포항시 남구 대도동	359-1		전	전	55	55	포항시 북구 양덕동 1198-1 풍림아이원 104-1201	이호원	근적면:6억6 천 이상권:30 년 중소기업 은행 납포항 지적	
52	포항시 남구 대도동	359-14		전	전	324	1		포항시		
53	포항시 남구 대도동	362-1		답	답	2,973	2,973		포항시		
54	포항시 남구 대도동	362-2		장	장	623	623		포항시		
55	포항시 남구 대도동	362-3		도	도	48	48		포항시		
56	포항시 남구 대도동	363		묘	묘	833	833		형산면		
57	포항시 남구 대도동	364-1		전	전	1,126	1,126		포항시		
58	포항시 남구 대도동	364-2		대	대	460	460		포항시		
59	포항시 남구 대도동	365		전	전	1,031	1,031		포항시		
60	포항시 남구 대도동	366		대	대	1,795	1,795		포항시		
61	포항시 남구 대도동	366-2		전	전	16	16		포항시		
62	포항시 남구 대도동	367-1		답	답	1,983	1,887		포항시		
63	포항시 남구 대도동	367-2		전	전	99	99		포항시		
64	포항시 남구 대도동	367-3		전	전	1,134	1,134		포항시		
65	포항시 남구 대도동	368-1		전	전	872	872		포항시		
66	포항시 남구 대도동	368-2		답	답	169	169		포항시		
67	포항시 남구 대도동	368-3		전	전	1,158	940		포항시		
68	포항시 남구 대도동	368-4		전	전	1,157	995		포항시		
69	포항시 남구 대도동	369-1		답	답	2,893	2,337		포항시		
70	포항시 남구 대도동	369-3		전	전	215	3		포항시		
71	포항시 남구 대도동	371-2		구	구	155	4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한국농어촌 공사		
72	포항시 남구 대도동	371-3		답	답	192	74		포항시		
73	포항시 남구 대도동	372-3		답	답	85	85		포항시		
74	포항시 남구 대도동	372-4		답	답	109	109		포항시		

구분				지 목		지적	편입면적	소유자		소유권이의 권리명세서	비 고
	소재지	분할전지번	분할후지번	공부	사실			주소	성명		
75	포항시 남구 대도동	372-5		답	답	30	30		포항시		
76	포항시 남구 대도동	391-7		전	전	620	45		포항시		
77	포항시 남구 대도동	392-12		전	전	22	18		포항시		
78	포항시 남구 대도동	422-22		답	답	106	106		포항시		
79	포항시 남구 대도동	622-3		도	도	636	610		포항시		
80	포항시 남구 대도동	622-15		잡	잡	181	181		포항시		
81	포항시 남구 대도동	622-16		전	전	117	117		국 (재정경제부)		
82	포항시 남구 대도동	622-21		도	도	281	55		포항시		
83	포항시 남구 대도동	622-24		도	도	8	8		포항시		

포항시 고시 제2011-97호

### 하천점용허가 및 실시계획 인가 고시

포항시 남구 연일읍 오천리 13-1번지 외 8필지(지방하천 : 칠성천)내에 하수재이용 시설관로 매설 목적의 하천점용(공작물의 신축) 허가신청건에 대하여 하천법 제33조 제1항에 의거 하천점용 허가 및 같은 법 제30조 제5항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인가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경상북도지사의 권한을 위임받아  
포 항 시 장 (인)

2011. 11. 23

□ 하천점용(공작물의 신축)허가 및 실시계획인가 내용

하천명	점용위치		점용목적	점용면적(m <sup>2</sup> )		점용기간		점용자	비고
	읍면동	지번		일시	영구	일시	영구		
칠성천 (지방하천)	연일읍 오천리	13-1번지 외 8필지	관로 매설	413.6	176	2011. 11. 23 ~ 2012. 11. 22	허가 일로 부터 영구	건설환경사업소장 (하수재생과)	

공 고

포항시공고 제2011-1074 호

공 인 공 고

포항시공인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공인의 인영을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포 항 시 장 박 승 호

2011. 11. 18

- 1. 등록공인 최초 사용일 : 2011. 11. 24
- 2. 등록 사유 : 포항시학교용지부담금 관리
- 3. 등록 공인명 및 인영

공 인 명	규 격	인 영	비 고
포 항 시 학 교 용 지 부 담 금 특 별 회 계 출 납 원 인	한글전서체 1.8cm정방형		신규 등록

포항시 공고 제2011-1075호

포항시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포항시장 박승호

2011. 11. 22.

**포항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보전목적의 용도지역에 일부 건축물의 건폐율 완화, 도시계획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보완, 일부 용도지역의 허용 건축물 완화, 타 법의 개정 및 용어 순화를 위하여 일부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녹지지역 등에서 문화재, 사찰, 한옥에 대한 건폐율 완화
- 나. 생산녹지지역에서 설치하는 농수산물관련시설에 대한 건폐율 완화
- 다. 도시계획위원회의 임기 및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
- 라.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의 허용건축물 완화
- 마. 타법 개정 및 용어 순화에 따른 조례 개정

**3. 관련법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등

4. 개정 조례안 : 포항시 홈페이지(www.ipohang.org) 참조

5. 의견제출

이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1. 12.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포항시장(참조 : 도시계획과장, 주소 : 포항시 남구 시청앞길 100번지, 전화 270-3465, FAX 270-3470, E-mail : kimsiok@korea.kr)에게 서면, 전화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 반 여부와 그 사유)
- 나. 성명(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 다. 기타 필요한 사항 등

6. 기 타

자세한 내용은 포항시 홈페이지(www.ipohang.org)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끝.

## 포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포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목적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2조 본문 중 “법 제3조”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도시관리계획안의 주요내용을”를 “전국 또는 도시관리계획안의 주요내용을”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영 제2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2조제5항에 따라”로 한다.

제10조 본문 중 “법 제4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44조의3제3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11조 본문 중 “영 제39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영 제39조제1항 및 영 제39조의2제6항에 따라”로 한다.

제13조 본문 중 “각호의 1과”를 “각 호의 어느 하나와”로 한다.

제14조 본문 중 “법 제51조제1항제11호”를 “법 제51조제1항제10호”로 하고,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며, 같은 조 제1호를 삭제한다.

제15조 본문 및 같은 조 제1호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변경인 경우”를 “변경인 경우(층수변경이 수반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하며, 제5호 중 “각목의 1”을 “각 목의 어느 하나”로, 제11호 중 “주차장 출입구·차량출입구·보행자출입구의 위치변경인 경우”를 “주차장 출입구, 차량출입구 또는 보행자출입구의 위치변경 및 보행자 출입구의 추가 설치인 경우”

로 한다.

제15조제12호 중 “영 제45조제3항 각호” 를 “영 제45조제4항 각 호” 로 한다.

제17조 본문 중 “각호의 1” 을 “각 호의 어느 하나” 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당해” 를 “해당” 으로, 같은 조 제7호 중 “기타” 를 “ 그 밖에” 로 한다.

제18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20조 본문 중 “각호의 1” 을 “각 호의 어느 하나” 로 하고, 본문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영 제57조제1항제1의2호다목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아니하는 건축물의 용도·규모 등은 다음과 같다. 단, 다음 각 호의 경우라 할지라도 제21조제2호 규정은 적용한다.

-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차목·타목 및 파목의 시설은 제외한다)

제23조제1항 중 “건설교통부” 를 “국토해양부” 로 한다.

제25조제2항제6호 중 “도시첨단산업단지” 를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준산업단지” 로 한다.

제25조제2항제7호 중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52조에 따른” 으로 한다.

제25조제2항제8호 중 “「문화재보호법」 제5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 를 “「문화재보호법」 제5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로 하고, “120%이하” 를 “120퍼센트 이하” 로, “90%” 를 “90퍼센트” 로 한다.

제25조제3항 중 “각호의 1” 을 “각 호의 어느 하나” 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당해” 를 “해당” 으로, 제2호 중 “각목의 1” 을 “각 목의 어느 하나” 로 한다.

제25조제6항을 제7항으로, 같은 조 제7항을 제9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과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영 제84조제5항제4호에 의거 녹지지역·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기존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경우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

- 1.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사찰
- 2.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지정문화재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등록문화재
- 3.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6호에 따른 한옥

⑧ 영 제84조제7항에 따라 생산녹지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하며, 해당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로 한다.

- 1. 「농지법」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의 가공·처리시설(시 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의 가공·처리시설에 한정한다) 및 농수산업 관련 시험·연구시설
- 2.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5항제1호에 따른 농산물 건조·보관시설

제26조제2항제4호 중 “제2조제5호라목의 규정에 의한” 을 “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51조 규정에 의한” 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51조에 따른” 으로 한다.

제26조제2항제6호 중 “「문화재보호법」 제5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를 “「문화재보호법」 제5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로 하고, “120%이하” 를 “120퍼센트 이하” 로 한다.

제26조제3항 중 “각호의 1” 을 “각 호의 어느 하나” 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당해” 를 “해당” 으로, 같은 조 제5항 중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을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으로 한다.

제30조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기타” 를 “그 밖의” 로 한다.

제32조제1항제11호 중 “각목의 1” 을 “각 목의 어느 하나” 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호 내지 제3호” 를 “제1호, 제2호, 제3호” 로 한다.

제33조제4항 중 “각호의 1” 을 “각 호의 어느 하나” 로 한다.

제35조제1항과 제2항 중 “기타” 를 “그 밖에” 로 한다.

제36조 본문 중 “당해” 를 “해당” 으로 한다.

제37조 본문 중 “당해” 를 “해당” 으로 한다.

제38조제12호 중 “각목의 1” 을 “각 목의 어느 하나” 로 한다.

제39조제11호와 제14호 중 “각목의 1” 을 “각 목의 어느 하나” 로 하고, 같은 조 제 14호나목 중 “기타” 를 “그 밖에” 로 한다.

제41조제5호 중 “「수질환경보전법」” 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로 하고, “「소음·진동규제법」” 을 “「소음·진동관리법」” 으로 한다.

제45조제5호 중 “기타” 를 “그 밖에” 로 한다.

제46조제3항 중 “복지환경국장, 건설도시국장” 을 “환경업무관련 국장, 도시업무관련 국장” 으로 하고, 같은조 제5항중 “연임할 수 있다” 를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로 한다.

제48조제3항 중 “필요한 때에는 위원장이 관계관을 출석 설명하게 할 수 있으며 설명이 끝나면 즉시 퇴장토록 한다.” 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기관 또는 부서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도시계획에 관하여 식견이 풍부한 자의 설명을 들을 수 있다.” 로 하고, 같은 조 제4항과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위원회는 도시관리계획을 제안한 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제안한 도시관리계획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제안자에게 부담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심의한 경우에는 심의결과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 제안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도시관리계획이나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나 자문의 경우 3회에 한하여 심의나 자문을 할 수 있다.

제48조의2 제2항 중 “인” 을 “명” 으로 한다.

제50조의2제1항 중 “당해” 를 “해당” 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1년” 을 “6개월” 로 한다.

제54조제3항제3호 중 “당해” 를 “해당” 으로 한다.

제55조 본문 중 “제49조 내지 제52조” 를 “제49조부터 제52조까지” 로 한다.

제61조의2제2항 중 “당해” 를 “해당” 으로 한다.

제62조를 삭제한다.

별표 2를 삭제한다.

별표 4 제1호 중 “(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를 “[4층 이하(「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단지형 연립주택 및 같은 항 제1호의2에 따른 단지형 다세대주택인 경우에는 5층 이하를 말하며, 단지형 연립주택의 1층 전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필로티 부분을 층수에서 제외하고, 단지형 다세대주택의 1층 바닥면적의 2분의 1 이상을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층수에서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건축물만 해당한다.] ” 로 한다.

별표 4 제2호사목 중 “(유스호스텔을 제외한다)” 를 “(유스호스텔의 경우 너비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로 한다.

별표 5 제1호와 제2호 중 “건축물[18층 이하(2개 이상의 건축물을 함께 건축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평균 층수가 18층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의 건축물에 한한다” 를 “건축물” 로 한다.

별표 5 제2호바목과 별표 6 제2호 바목 중 “(유스호스텔을 제외한다)” 를 “(유스호스텔의 경우 너비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로 한다.

별표 16 제2호아목(2) 중 “별표 8” 을 “별표 10” 으로 한다.

별표 17 제2호마목(2) 중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제3호 또는 같은 법 제4조에 해당하는 자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것에 한한다)” 를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농업인·어업인 및 생산자단체,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후계농어업경영인,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전업농어업인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것에 한한다)” 로 한다.

별표 18 제2호 가목 중 “제1종근린생활시설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 면적의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같은 호 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를 “제1종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 및 제과점을 제외한다)” 로 한다.

별표 18 제2호 나목 중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 을 “제2종 근린생활시설 (같은 호 나목·사목 및 타목에 해당하는 것과 일반음식점 및 단란주점을 제외한다)” 로 한다.

별표 18 제2호 자목 중 “처리시설 중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 를 “처리시설” 로 한다.

별표 19 제2호자목(2) 중 “별표 8” 을 “별표 10” 으로 한다.

별표 20 제1호차목(2) 중 “아니하거나” 를 “아니하고” 로 한다.

별표 20 제2호 중 “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 을 “휴게음식점·제과점·일반음식점” 으로 한다.

별표 20 제2호카목 중 “「건축법 시행령」” 을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에 설치되는 「건축법 시행령」” 으로 하고, 같은 목 (2)중 “아니하거나” 를 “아니하고” 로 한다.

별표 21 제2호가목 중 “제1종근린생활시설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 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같은 호 나목, 다목 및 아목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를 “제1종근린생활시설(같은 호 나목 및 아목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로 한다.

별표 25 본문 중 “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숙박시설” 을 “휴게음식점 등” 으로 한다.

별표 25 제1호사목 중 “지방1급 하천의 양안 중 당해” 를 “지방 하천(구 지방1급 하천의 경우에 한한다.)의 양안 중 해당” 으로 한다.

별지 제1호 서식부터 별지 제5호 서식까지를 삭제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p>
<p>제2조(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방향) 포항시(이하 “시”라 한다)의 국토이용 및 관리는 법 제3조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자연환경의 보전 및 자원의 효율적 운영을 통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p>	<p>제2조(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방향)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p>
<p>제7조(주민의견 청취) ① 시장은 법 제2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에 관하여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때에는 도시관리계획안의 주요내용을 시의 지역을 주된 보급 지역으로 하는 2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공고된 내용을 시청, 구청, 읍·면·동사무소 게시판과 시홈페이지를 통하여 게재하여야 하며 도시관리계</p>	<p>제7조(주민의견 청취) ① ----- ----- ----- 전국 또는 도시계획안의 주요내용을 ----- ----- -----</p>

현 행	개 정
<p>획안을 14일 이상 주민 및 이해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p> <p>② (생 략)</p> <p>③ 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의견을 도시관리계획안에 반영할 것인지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열람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u>당해</u>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p>----- ----- -----</p> <p>② (현행과 같음)</p> <p>③ ----- ----- ----- ----- ----- ----- ----- ----- ----- -----</p>
<p>제8조(재공고·열람사항)① 시장은 <u>영 제22조제5항의</u>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의견을 도시관리계획안에 반영하고자하는 경우 그 내용이 영 제25조제3항 각호 및 영 제25조제4항 각호에 해당하지 않는 사항인 때에는 그 내용을 다시 공고·열람하게 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p> <p>② (생 략)</p>	<p>제8조(재공고·열람사항) 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2조제5항에 따라 ----- ----- ----- ----- ----- ----- ----- ----- ----- -----</p> <p>② (현행과 같음)</p>
<p>제10조(공동구의 점용료·사용료) <u>법 제44조제5항의</u> 규정에 의한 공동구의 점용료 또는 사용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하는 조례에 의한다.</p>	<p>제10조(공동구의 점용료·사용료) <u>법 제44조의3제3항에</u> 따른 ----- ----- ----- ----- -----</p>
<p>제11조(공동구의 관리비용 등) <u>영 제39조 제7항의</u> 규정에 의하여 공동</p>	<p>제11조(공동구의 관리비용 등) <u>영 제39조제1항 및 영 제39조의2제6항</u></p>

현 행	개 정
<p>구의 관리비용·관리방법, 공동구관리협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하는 조례에 의한다.</p>	<p><del>에 따라</del>----- ----- ----- -----</p>
<p>제13조(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안에서 설치가능한 건축물 등) 영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은 다음 <u>각호의 1</u> 과 같다.</p> <p>1. ~ 4. (생 략)</p>	<p>제13조(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안에서 설치가능한 건축물 등) ----- ----- ----- -----<u>각 호의 어느 하나와</u> --- 1. ~ 4. (현행과 같음)</p>
<p>제14조(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대상) <u>법 제51조제1항제11호</u> 및 영 제43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지역은 다음 <u>각호의 1</u>에 해당 하는 지역으로 한다.</p> <p>1.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의3의 규정에 의한 재건축 대상 공동주택부지</p> <p>2. ~ 7. (생 략)</p>	<p>제14조(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대상) <u>법 제51조제1항제10호</u> ----- ----- ----- -----<u>각 호의 어느 하나</u>----- 1. &lt;삭 제&gt; 2. ~ 7. (현행과 같음)</p>
<p>제15조(지구단위계획중 경미한 변경 사항) 영 제25조제4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지구단위계획중 다음 <u>각호의 1</u>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항은 도시계획위원회와 건축위원회의 공동 심의 및 자문을 생략할 수 있</p>	<p>제15조(지구단위계획중 경미한 변경 사항) ----- ----- -----<u>각 호의 어느 하나</u>----- ----- -----</p>

현 행	개 정
<p>다.</p> <p>1.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한 용도 지역·용도지구 또는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변경 결정으로서 영 제25조제3항 <u>각호의 1</u>에 해당하는 변경인 경우</p> <p>2. ~ 3. (생 략)</p> <p>4. 건축물높이의 20퍼센트 이내의 <u>변경인 경우</u></p> <p>5. 영 제46조제7항제2호 <u>각목의 1</u>에 해당하는 획지의 규모 및 조성계획의 변경인 경우</p> <p>6. ~ 10. (생 략)</p> <p>1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한 교통처리 계획중 <u>주차장 출입구·차량출입구·보행자출입구의 위치 변경인 경우</u></p> <p>12. 영 제45조제3항 <u>각호</u>에 관한 사항의 변경인 경우</p> <p>제17조(조건부 허가) 시장은 다음 <u>각호의 1</u>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제5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행위허가 시에는 미리 개발행위가 신청자의 의견을 들어 조건을 붙일 수 있다.</p> <p>1. (생 략)</p>	<p>---</p> <p>1. ----- ----- ----- -----<u>각 호의 어느 하나</u> -----</p> <p>2. ~ 3. (현행과 같음)</p> <p>4. ----- -----<u>변경인 경우(층수변경이 수반되는 경우를 포함한다)</u></p> <p>5. -----<u>각 목의 어느 하나</u>-----</p> <p>6. ~ 10. (현행과 같음)</p> <p>1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u>주차장 출입구·차량출입구 또는 보행자출입구의 위치변경 및 보행자 출입구의 추가 설치인 경우</u></p> <p>12. 영 제45조제4항 <u>각 호</u>----- -----</p> <p>제17조(조건부 허가) ----- <u>각 호의 어느 하나</u>----- ----- ----- -----</p> <p>1. (현행과 같음)</p>

현 행	개 정
<p>2. 당해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경관·미관 등이 손상될 우려가 있을 때</p> <p>3. ~ 6. (생략)</p> <p>7. 기타 도시의 정비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p> <p>제18조(개발행위허가의 규모) ① (생략)</p> <p>② 영 제55조제5항제3호 단서 규정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인 토지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경우, 제21조 제2호 규정에 해당하는 개발행위허가를 하려면 도시계획위원회 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p> <p>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p> <p>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p> <p>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p> <p>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차목·타목 및 파목의 시설은 제외한다)</p>	<p>2. 해당 ----- ----- -----</p> <p>3. ~ 6. (현행과 같음)</p> <p>7. 그 밖에 ----- -----</p> <p>제18조(개발행위허가의 규모) ① (현행과 같음)</p> <p>〈삭제〉</p> <p>〈삭제〉</p> <p>〈삭제〉</p> <p>〈삭제〉</p> <p>〈삭제〉</p>

현 행	개 정
<p>제20조(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법 제59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 안에서 시행하는 개발행위중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행위는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p> <p>1. ~ 2. (생략)</p> <p><u>&lt;신설&gt;</u></p>	<p>제20조(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① ----- ----- ----- ----- ----- -----</p> <p>1. ~ 2. (현행과 같음)</p> <p>②영 제57조제1항제1의2호다목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아니하는 건축물의 용도·규모 등은 다음과 같다. 단 다음 각호의 경우라 할지라도 제21조제2호 규정은 적용한다.</p> <p>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p> <p>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p> <p>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p> <p>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차목·타목 및 파목의 시설은 제외한다)</p>
<p>제23조(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 ①</p>	<p>제23조(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 ①</p>

현 행	개 정
<p>영 제5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 보증금의 예치금액은 기반시설의 설치, 위해의 방지, 환경오염의 방지, 경관 및 조경 등에 필요한 비용을 <u>건설교통부장관</u>이 정하는 표준품셈으로 산정한 금액으로 하고, 산정이 어려울 경우에는 총사업비의 2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p>	<p>----- ----- ----- ----- -----<u>국토해양부</u>----- ----- ----- -----</p>
<p>② ~ ③ (생 략)</p>	<p>② ~ ③ (현행과 같음)</p>
<p>제25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①</p>	<p>제25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①</p>
<p>(생 략)</p>	<p>(현행과 같음)</p>
<p>② (생 략)</p>	<p>② (현행과 같음)</p>
<p>1. ~ 5. (생 략)</p>	<p>1. ~ 5.(현행과 같음)</p>
<p>6. 공업지역안에 있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 가목, 나목, 다목의 규정에 의한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및 <u>도시첨단산업단지</u> : 80퍼센트 이하</p>	<p>6. ----- ----- ----- ----- -----<u>도시첨단산업 단지</u> 및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준산업단지 -----</p>
<p>7. 「<u>재래시장 및 상점가육성을 위한 특별법</u>」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시장 사업시행구역중 주거지역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의한다.</p>	<p>7. 「<u>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u>」 제52조에 따른 ----- ----- -----</p>
<p>가. ~ 다. (생 략)</p>	<p>가. ~ 다. (현행과 같음)</p>
<p>8. 「<u>문화재보호법</u>」 제5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등록문화재인 건축물이 있는</p>	<p>8. 「<u>문화재보호법</u>」 제5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 -----</p>

현 행	개 정
<p>대지안에서의 용도지역별 건폐율은 제1항 각 호의 <u>120%이하</u>로 한다. 이 경우 건폐율은 90%를 초과할 수 없다.</p> <p>③ 영 제8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 또는 준주거지역의 방화지구 안에 있는 대지에 적용하는 건폐율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u>각호의 1</u>에 의한다.</p> <p>1. <u>담해</u> 건축물의 주요구조부가 내화 구조인 것 가. ~ 나. (생략)</p> <p>2. 가로모퉁이에 있는 대지로서 다음 <u>각목의 1</u>에 해당하는 것 가. ~ 나. (생략)</p> <p>④~ ⑤ (생략)</p> <p><u>&lt;신설&gt;</u></p>	<p>----- -----<u>120퍼센트 이하</u> -----<u>90퍼센트</u> -----</p> <p>③ ----- ----- ----- ----- -----<u>각 호의 어느 하나</u>-----</p> <p>1. <u>해당</u> ----- ----- 가. ~ 나. (현행과 같음)</p> <p>2. ----- --<u>각 목의 어느 하나</u>----- 가. ~ 나. (현행과 같음)</p> <p>④ ~ ⑤ (현행과 같음)</p> <p>⑥ 영 제84조제5항제4호에 의거 <u>녹지지역·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기존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경우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u></p> <p>1. 「<u>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u>」 제2조제1호에 따른 <u>전통사찰</u></p> <p>2. 「<u>문화재보호법</u>」 제2조제2항에 따른 <u>지정문화재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등록문화재</u></p>

현 행	개 정
<p>⑥ (생 략)  <u>&lt;신 설&gt;</u></p> <p>⑦ (생 략)</p> <p>제26(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율) ①                      (생 략)                      ② (생 략)                      1. ~ 3. (생 략)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                      률」 제2조제5호라목의 <u>규정에                      의한 농공단지(도시지역외의 지                      역에 지정된 농공단지에 한한다)</u>                      : 150퍼센트 이하                      5.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                      한 특별법」 제51조 규정에 의한                      시장 사업시행 구역중 주거지역                      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p>	<p>3.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6호                      에 따른 한옥                      ⑦ (현행과 같음)                      ⑧영 제84조제7항제에 따라 생산                      녹지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하며, 해당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로 한다.</p> <p>1. 「농지법」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의 가공·처리시설                      (포항시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의                      가공·처리 시설에 한정한다) 및                      농수산업 관련 시험·연구시설                      2.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5항                      제1호에 따른 농산물 건조·보관                      시설                      ⑨ (현행과 같음)</p> <p>제26(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율)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1.~3. (현행과 같음)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                      률」 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                      -----                      -----                      -----                      5.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                      한 특별법」 제51조에 따른 ---                      -----                      -----</p>



현 행	개 정
<p>로 산출된 용적률 이하로 <u>당해</u> 대지의 용적률을 정할 수 있다.(이하 생략)</p> <p>⑤ 영 제85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의 따라 지정된 경제자유구역 안에서의 용적률은 조례로 규정한 해당 용도지역 용적률의 150퍼센트 이하의 범위 안에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승인된 실시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p>	<p>-----<u>해당</u>-----</p> <p>-----</p> <p>-----</p> <p>⑤ -----</p> <p>--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p> <p>-----</p> <p>-----</p> <p>-----</p> <p>-----</p> <p>-----</p> <p>-----</p>
<p>제30조(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높이) (생 략)</p> <p>1. (생 략)</p> <p>2. <u>전통경관지구안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는 3층 또는 10미터를 초과 할 수 없다.</u></p> <p>3. 수변 및 <u>기타</u> 경관지구안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는 5층 또는 16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p>	<p>제30조(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높이) (현행과 같음)</p> <p>1. (현행과 같음)</p> <p>2. &lt;삭 제&gt;</p> <p>3. -----<u>그 밖의</u>-----</p> <p>-----</p> <p>-----</p>
<p>제32조(공항시설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① (생 략)</p> <p>1. ~ 10. (생 략)</p> <p>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중 다음 <u>각목의 1</u>에 해당하는 건축물</p>	<p>제31조(공항시설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① (현행과 같음)</p> <p>1. ~ 10. (현행과 같음)</p> <p>11. -----</p> <p>-----</p> <p><u>각 목의 어느 하나</u> -----</p>



현 행	개 정
<p>타 이와 유사한 시설물을 도로에서 보이게 설치할 수 없다.</p>	<p><u>밖에</u> ----- -----</p>
<p>② 미관지구안에는 굴뚝·환기설비 <u>기타</u> 이와 유사한 것을 건축물의 전면에 설치 할 수 없다.</p>	<p>② ----- <u>그 밖에</u>----- -----</p>
<p>제36조(방재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방재 지구안의 건축제한은 <u>당해</u>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행정기관과의 협의에 따른다.</p>	<p>제36조(방재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 ----- --<u>해당</u>----- -----</p>
<p>제37조(보존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 지구안의 건축제한은 <u>당해</u>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행정기관과의 협의에 따른다.</p>	<p>제37조(보존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 -----<u>해당</u>----- ----- -----</p>
<p>제38조(학교시설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생 략) 1. ~ 11. (생 략)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중 다음 <u>각목의 1</u>에 해당하는 건축물 가. ~ 나. (생 략) 13. ~ 14. (생 략)</p>	<p>제38조(학교시설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현행과 같음) 1. ~ 11. (현행과 같음) 12. ----- ----- <u>각 목의 어느 하나</u>----- 가. ~ 나. (현행과 같음) 13. ~ 14. (현행과 같음)</p>
<p>제39조(공용시설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생 략) 1. ~ 10. (생 략)</p>	<p>제39조(공용시설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현행과 같음) 1. ~ 10. (현행과 같음)</p>

현 행	개 정
<p>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다만, 다음 <u>각목의 1</u>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12. ~ 13. (생 략)</p> <p>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중 다음 <u>각목의 1</u>에 해당하는 건축물</p> <p>가. (생 략)</p> <p>나. 감화원 <u>기타</u> 범죄자의 갱생·보육·교육·보건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p> <p>15. (생 략)</p>	<p>11. ----- ----- -<u>각 목의 어느 하나</u>----- -----</p> <p>12. ~ 13. (현행과 같음)</p> <p>14. ----- ----- <u>각 목의 어느 하나</u>----- 가. (현행과 같음) 나. -----<u>그 밖에</u> ----- -----</p> <p>15. (현행과 같음)</p>
<p>제41조(공항시설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생 략)</p> <p>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폐기물 관리법」, 「소음·진동규제법」의 관계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나 신고를 받아야 하는 공장에 한한다)</p> <p>6. ~ 7. (생 략)</p>	<p>제41조(공항시설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현행과 같음)</p> <p>5. ----- ----- <u>「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u>----- ----- <u>「소음·진동관리법」</u>----- -----</p> <p>6. ~ 7. (현행과 같음)</p>
<p>제45조(기능) (생 략)</p> <p>1. ~ 4. (생 략)</p> <p>5. <u>기타</u> 도시관리계획에 관하여 시장이 부의한 사항에 대한 자문</p>	<p>제45조(기능) (현행과 같음)</p> <p>1. ~ 4. (현행과 같음)</p> <p>5. <u>그 밖에</u> ----- -----</p>
<p>제46조(구성 및 운영) ① ~ ②</p>	<p>제46조(구성 및 운영) ① ~ ②</p>

현 행	개 정
<p>(생 략)</p> <p>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부시 장, 복지환경국장, 건설도시국장으 로 한다.</p> <p>④ (생 략)</p> <p>⑤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 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 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중 남은 기간으로 한다.</p> <p>제48조(회의 운영) ① ~ ② (생 략)</p> <p>③ 위원회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 로 하고 심의상 <u>필요한 때에는 위 원장이 관계관을 출석 설명하게 할 수 있으며 설명이 끝나면 즉시 퇴 장토록 한다.</u></p> <p>&lt;신 설&gt;</p> <p>&lt;신 설&gt;</p>	<p>(현행과 같음)</p> <p>③ ----- --<u>환경업무관련 국장, 도시업무관 련 국장</u>-----</p> <p>④ (현행과 같음)</p> <p>⑤ ----- -----, <u>1회에 한하여</u> ----- -----</p> <p>제48조(회의 운영) ① ~ ② (현행과 같음)</p> <p>③ ----- ----- <u>필요하 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기관 또 는 부서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도시계 획에 관하여 식견이 풍부한 자의 설명을 들을 수 있다.</u></p> <p>④ 위원회는 도시관리계획을 제안 한 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의 견을 청취할수 있으며, 제안한 도 시관리계획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제안자에게 부담을 추가하는 내용 으로 심의한 경우에는 심의결과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 제안자에게 통 보하여야 한다.</p> <p>⑤도시관리계획이나 개발행위에 대 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나 자문 의 경우 3회에 한하여 심의나 자</p>

현 행	개 정
<p>제48조의2(회의의 비공개 등) ① (생 략) ② 분과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 1 인을 포함한 5인 이상 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 ⑥ (생 략)</p> <p>제50조의2(회의의 비공개 등) ① 위 원회는 비공개 회의를 원칙으로 하 되, 관계법령에서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당 해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회의록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 되, 회의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 공개 요청이 있는 경우에 공개하 며, 그 공개는 열람하게 하는 방법 에 의한다. 다만, 공개에 의하여 부동산 투기 유발 등 공익을 현저 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침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이 름·주민등록번호·직위 및 주소 등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에 관한 부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제54조(구성) ① ~ ② (생 략) ③ (생 략)</p>	<p>문을 할 수 있다.</p> <p>제48조의2(회의의 비공개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명-----명-----명----- ----- ③ ~ ⑥ (현행과 같음)</p> <p>제50조의2(회의의 비공개 등) ① - ----- ----- ----- -----해 당----- ② -----6개월 ----- ----- ----- ----- ----- ----- ----- ----- -----</p> <p>제54조(구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p>

현 행	개 정
<p>1. ~ 2. (생 략)</p> <p>3. 지구단위계획을 심의하기 위한 분과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u>당해</u> 분과위원회의 위원 전원을 공동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한다.</p>	<p>1. ~ 2. (현행과 같음)</p> <p>3. ----- ----- ----<u>당해</u>----- ----- -----</p>
<p>제55조(위원장의 직무, 회의 운영 등) 공동 위원회의 위원장 등의 직무와 회의 운영, 간사 및 서기, 자료제출, 회의의 비공개, 회의록, 수당 및 여비지급 등에 대하여는 제47조 및 제48조, <u>제49조 내지 제52조</u>의 규정을 준용한다.</p>	<p>제55조(위원장의 직무, 회의 운영 등) ----- ----- ----- ----- ----- -----<u>제49조부터 제52조</u>까지-----</p>
<p>제61조의2(과태료의 부과기준 등) ① (생 략)</p> <p>② 제1항의 과태료 산정을 위한 토지가격은 과태료 부과기준일 현재의 개별공시시가로 하되, 부과기준일 현재 <u>당해</u>연도에 적용할 개별공시지가가 결정고시되지 아니한 때에는 직전연도에 적용되던 개별공시지가로 한다.</p> <p>③ (생 략)</p>	<p>제61조의2(과태료의 부과기준 등)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 ----<u>해당</u>----- ----- -----</p> <p>③ (현행과 같음)</p>
<p>제62조(이의제기 등) 법 제14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를 제기하고자 할 때에는 <u>별지 제3호 서식의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시</u></p>	<p>제62조(이의제기 등) &lt;삭 제&gt;</p>

현 행	개 정
<p><u>장은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여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u></p> <p><b>【별표 2】 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부칙 제8조제1항관련)</b></p> <p><b>【별표 4】 제1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4조제3호관련)</b></p> <p>1. 영에 규정되어 있어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p> <p>가. ~ 마. (생략)</p> <p>2. (생략)</p> <p>가. ~ 바. (생략)</p> <p>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p>	<p><b>【별표 2】 &lt;삭제&gt;</b></p> <p><b>【별표 4】 제1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4조제3호관련)</b></p> <p>1. ----- -----[4층 이하(「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단지형 연립주택 및 같은 항 제1호의2에 따른 단지형 다세대주택인 경우에는 5층 이하를 말하며, 단지형 연립주택의 1층 전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필로티 부분을 층수에서 제외하고, 단지형 다세대주택의 1층 바닥면적의 2분의 1 이상을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층수에서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건축물만 해당한다.]</p> <p>가. ~ 마. (현행과 같음)</p> <p>2. (현행과 같음)</p> <p>가. ~ 바. (현행과 같음)</p> <p>사.-----</p>

현 행	개 정
<p>제12호의 수련시설(<u>유스호스텔을 제외한다</u>)</p> <p>아. ~ 더. (생 략)</p> <p><b>【별표 5】 제2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4조제4호관련)</b></p> <p>1. 영에 규정되어 있어 건축할 수 있는 <u>건축물[18층 이하(2개 이상의 건축물을 함께 건축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평균 층수가 18층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u></p> <p>가. ~ 바. (생 략)</p> <p>2. 도시계획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u>건축물[18층 이하(2개 이상의 건축물을 함께 건축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평균층수가 18층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의 건축물에 한한다]</u></p> <p>가. ~ 마. (생 략)</p> <p>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u>유스호스텔을 제외한다</u>)</p> <p>사. ~ 너. (생 략)</p> <p><b>【별표 6】 제3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4조제5호관련)</b></p>	<p>-----(<u>유스호스텔의 경우 너비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u>)</p> <p>아. ~ 더. (현행과 같음)</p> <p><b>【별표 5】 제2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4조제4호관련)</b></p> <p>1. ----- ----- <u>건축물</u></p> <p>가. ~ 바. (현행과 같음)</p> <p>2. ----- -----<u>건축물</u></p> <p>가. ~ 마. (현행과 같음)</p> <p>바.----- -----(<u>유스호스텔의 경우 너비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u>)</p> <p>사. ~ 너. (현행과 같음)</p> <p><b>【별표 6】 제3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4조제5호관련)</b></p>

현 행	개 정
<p>1. (생 략)</p> <p>2. (생 략)</p> <p>가. ~ 마. (생 략)</p> <p>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 12호의 수련시설(유스호스텔을 제외한다)</p> <p>사. ~ 너. (생 략)</p> <p><b>【별표 16】 생산농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4조제15호관련)</b></p> <p>1. (생 략)</p> <p>2. (생 략)</p> <p>가. ~ 사. (생 략)</p> <p>아. (생 략)</p> <p>(1) (생 략)</p> <p>(2)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8에 따른 1종 사업장부터 3종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것</p> <p>(3) ~ (5) (생 략)</p> <p>자. ~ 거. (생 략)</p> <p><b>【별표 17】 자연농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4조제16호관련)</b></p> <p>1. (생 략)</p>	<p>1. (현행과 같음)</p> <p>2. (현행과 같음)</p> <p>가. ~ 마. (현행과 같음)</p> <p>바. ----- ----- (유스호스텔의 경우 너비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p> <p>사. ~ 너. (현행과 같음)</p> <p><b>【별표 16】 생산농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4조제15호관련)</b></p> <p>1. (현행과 같음)</p> <p>2. (현행과 같음)</p> <p>가. ~ 사. (현행과 같음)</p> <p>아. (현행과 같음)</p> <p>(1) (현행과 같음)</p> <p>(2) ----- ----- ----- ----- --- 별표 10 --- -----</p> <p>(3) ~ (5) (현행과 같음)</p> <p>자. ~ 거. (현행과 같음)</p> <p><b>【별표 17】 자연농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4조제16호관련)</b></p> <p>1. (현행과 같음)</p>

현 행	개 정
<p>2. (생 략)                      가. ~ 라. (생 략)                      마. (생 략)                      (1) (생 략)                      (2)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제68 조제2항에 따른 농수산물직판장으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 미만인 것(「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제3호 또는 같은 법 제4조에 해당하는 자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 하는 것에 한한다)</p> <p>바. ~ 파. (생략)</p> <p><b>【별표 18】 보전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4조제17호관련)</b></p> <p>1. (생 략)                      2. (생 략)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p>	<p>2. (현행과 같음)                      가. ~ 라. (현행과 같음)                      마.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                      -----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농업인·어업인 및 생산자 단체,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후계농어업경영인,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전업농어업인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것에 한한다)</p> <p>바. ~ 파. (현행과 같음)</p> <p><b>【별표 18】 보전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4조제17호관련)</b></p> <p>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가.-----                      제1종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 및 제과점을 제외한다)</p>



현 행	개 정
<p>차. ~ 너. (생 략)</p> <p><b>【별표 20】 계획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4조제19호관련)</b></p> <p>1. (생 략)</p> <p>가. ~ 자. (생 략)</p> <p>차 (생 략)</p> <p>(1) (생 략)</p> <p>(2) 화학제품제조시설(석유정제 시설을 포함한다). 다만, 물·용제류 등 액체성 물질을 사용하지 <u>아니하거나</u> 제품의 성분이 용해·용출 되지 아니하는 고체성 화학제품제조시설은 제외한다.</p> <p>(3) ~ (6) (생 략)</p> <p>카. ~ 리. (생 략)</p> <p>2. 도시계획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하며, <u>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u> 및 숙박시설은 별표 25에서 규정한 지역에 설치하는 것에 한한다)</p> <p>가. ~ 차. (생 략)</p> <p>카. 「<u>건축법 시행령</u>」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부지면적(2이상의 공장을 함께 건축하거나 기존 공장부지에 접하여 건축하는 경우와 2 이상의</p>	<p>차. ~ 너. (현행과 같음)</p> <p><b>【별표 20】 계획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4조제19호관련)</b></p> <p>1. (현행과 같음)</p> <p>가. ~ 자. (현행과 같음)</p> <p>차 (현행과 같음)</p> <p>(1) (현행과 같음)</p> <p>(2) ----- ----- -----<u>아니하고</u> ----- -----</p> <p>(3) ~ (6) (현행과 같음)</p> <p>카. ~ 리. (현행과 같음)</p> <p>2. ----- ----- -----<u>휴게음식점·제과점·일반음식점</u> 및 숙박시설은 별표 25에서 규정한 지역에 설치하는 것에 한한다)</p> <p>가. ~ 차. (현행과 같음)</p> <p>카. 「<u>환경정책기본법</u>」 제22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에 설치되는 「<u>건축법 시행령</u>」 ----- -----</p>

현 행	개 정
<p>부지가 너비 8미터 미만의 도로에 서로 접하는 경우에는 그 면적의 합계를 말한다)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것과 시장이 1만5천제곱미터 이상의 면적을 정하여 공장의 건축이 가능한 지역으로 고시한 지역 안에 입지하는 것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p> <p>(1) (생 략)</p> <p>(2) 화학제품제조시설(석유정제시설을 포함한다). 다만, 물·용제류 등 액체성 물질을 사용하지 <u>아니 하거나</u> 제품의 성분이 용해·용출되지 아니하는 고체성화학제품제조시설을 제외한다.</p> <p>(3) ~ (5) (생 략)</p> <p>타. ~ 너. (생 략)</p>	<p>----- ----- ----- ----- ----- ----- ----- ----- ----- -----</p> <p>(1) (현행과 같음)</p> <p>(2) ----- ----- -----<u>아니하고</u>----- ----- -----</p> <p>(3) ~ (5) (현행과 같음)</p> <p>타. ~ 너. (현행과 같음)</p>
<p><b>【별표 21】 농림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4조제20호관련)</b></p> <p>1. (생 략)</p> <p>2. (생 략)</p> <p>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u>제1종근린생활시설</u>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같은 호 나목,</p>	<p><b>【별표 21】 농림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4조제20호관련)</b></p> <p>1. (현행과 같음)</p> <p>2. (현행과 같음)</p> <p>가. ----- -----제1종근린생활시설(같은 호 나목 및 아목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 한다)</p>

